

속도 내는 원주~강릉 복선전철

공사비 2,920억 신속 집행

원주~강릉 복선전철 공사비 2,920억 원이 신속 집행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본부장: 최정환)는 지역경기 회복과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보된 추경예산 가운데 원주~강릉 복선전철 투입 사업비를 서둘러 집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14개 공구로 나눠 원주~강릉 복선전철 공사를 진행 중인 강원본부는 이번 추경 요구액이 전액 확보돼 공구별로 노반, 궤도, 전기 등 공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시공할 수 있게 됐다.

강원본부는 추경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당초 계획된 공정 일부를 설계 변경해 공사 물량을 추가할 방침이다.

최정환 본부장은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를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2017년 말 완공이라는 전체 공정에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신속한 공사와 자금 집행으로 지역경기와 국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본부는 매월 재정 집행 점검 및 리스크 대응 회의를 열어 공정과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이번 철도건설 추경 예산으로 6,834명 고용 창출과 1조 4,387억원 생산 유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공단은 연말까지 추경 6,472억원, 본예산 7조 9,787억원을 합친 8조 6,259억원을 집행해 경기 활성화를 꾀한다.

원주=유학렬기자 hyyoo@kwnews.co.kr

여주~원주 전철 예타 통과 연내 본격적인 공사 준비

사실상 확정적… 국토부에 통보 130억 철도 예산 요청 계획

도의 3대 현안 중 하나인 여주~원주간 전철 사업(21.8km)이 11월 중 확정돼 연내에 본격적인 공사 준비에 들어간다.

▶ 관련기사 3면

28일 새누리당 김기선(원주갑)·이강후(원주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월곶~판교 전철 구간과의 연계를 전제로 여주~원주 전철사업(단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구간 비용편익(B/C)은 1.04, 정책적 종합평가(AHP)는 0.584로 나왔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 1 이상, AHP 0.5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나오게 될 월곶~판교 구간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B/C '1' 이상이면 여주~원주 전철사업은 월곶~판교 구간과 연결돼 연내부터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현재 정치권과 정부부처 내에서는 월곶~판교 전철 구간에 대해서도 기존

의 신안산선과 일부 구간이 겹치면서 공사비용도 절감됨에 따라 무난히 1 이상의 B/C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여주~원주 전철 사업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여주~원주 전철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결과를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통보했고, 국토교통부는 연내 이 사업의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 130억원의 철도기본 계획 수시배정예산 사용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기선 이강후 의원은 “여주~원주 전철이 추진되면 도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동서철도망이 완성되는 만큼 도와 원주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다”며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원주 전철사업은 지난해 1월 예비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아 사업 추진에 진통을 겪어 왔다.

서울=홍현표기자 hphong@

국도5호선~홍천읍 최단 진입로 개설

하오안교 일원에 2016년 착공 계획

홍천군민들의 숙원사업인 국도 5호선에서 홍천읍을 잇는 최단 진·출입로가 개설될 경우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천군은 최근 국도 5호선 하오안리 입체교차로 설치 예산 23억 40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올해 실시설계를 거쳐 2016년 공사

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홍천읍에서 국도 5호선을 연결하는 최단거리에 진·출입로 설치는 그동안 홍천군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숙원사업이다.

현재 국도 5호선과 연결된 장전평의 진·출입로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데다 외지인의 경우 홍천방향 진입로를 찾지 못해 북방면까지 갔다 되돌아오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 개선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지난 2013년 12월 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홍천읍 군도 16호선 진입로 선형 개량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관련당국과 황영철 국회의원에게 진·출입로 설치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국도 5호선과 연결되는 진·출입로 위치는 군도 16호선에 위치한 신영중기 앞 삼거리에서 열산골의 하오안교 방향으로, 하오안교 일원에 길이 360m, 폭 7m의 입

체교차로가 설치된다.

홍천읍내에서 국도 5호선 입체교차로가 설치되면 국도 5호선과 국도 41호선이 연결돼 국도의 간선기능 회복과, 축제는 물론 지역의 명소를 찾는 많은 외지관광객들의 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국도 5호선에서 홍천읍 진·출입에 많은 불편이 있었는데 홍천읍내에서 국도 5호선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입체교차로가 설치되면 외지관광객들의 유입도 많아 지역발전의 청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천/유주현 joohyun@kado.net

예타 결과 경제성 확인 여주~원주철도 '파란불'

월곶~판교 타당성 재조사후 21.8km 구간 연내 추진 가능

여주~원주 철도 사업(단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돼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기선(원주 갑)·이강후(원주 을) 국회의원은 28일 공동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여주~원주 철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예타 조사 결과 여주~원주 철도 사업은 월곶~판교 전철사업 시행을 전제로 경제성분석(B/C) 수치가 1.04, 정책적 분석(AHP) 수치는 0.584로 각각 나타났다. 예타 조사 결과 경제성분석(B/C) 및 정책적분석(AHP) 수치가 각각 1.0과 0.5 이상이며 사업성이 있다는 의미다.

여주~원주 전철 사업은 국가 동서간 선철도망 구간 중 유일한 단절구간인 여주~원주(21.8km)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원주시가 50만 중부내륙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최대 현안사업이었지

만 예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월곶~판교 전철 예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사업 추진에 진통을 겪어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주~원주 전철사업의 연계구간인 월곶~판교 사업과 관련, “최근 신안산선 노선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월곶~판교 구간과 신안산선의 중복구간(시흥시청~광명간 7.9km) 발생에 따른 비용절감(7000억 수준) 요인이 생겨 사업 전망이 매우 밝다”라며 “올해 11월 월곶~판교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가 마무리되면 여주~원주 전철 사업도 연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김기선·이강후 의원은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시배정예산 130억 원 가운데 13억원 가량이 여주~원주 철도 사업에 투입돼 연내 기본계획예산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김기선·이강후 의원은 “여주~원주 철도사업이 추진되면 강원도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동서철도망이 완성되는 만큼 원주시민들의 수도권 접근성 향상과 강원도와 원주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진민수

▶ 관련기사 10면

【 2015.07.29(수) 건설경제 】

건협 등 10개 건설단체 탄원서

“건축법 개정안 즉각 철회해야”

현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
강행땐 위헌소송 등 나설것

대한건설협회 등 10개 건설단체가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한 건축법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면서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28일 국회 등에 제출했다.

김상희 의원이 지난달 29일 발의한 이 개정안은 건축법 위반에 영업정지 6개월, 이후 2년 안에 또 위반하면 영업정지 2년을 처분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벌금은 현행 1000만~1억원에서 1억~10억원으로 10배 상향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건설단체들은 도를 넘은 초법적 조치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실, 국토교통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참여단체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등이다.

이들은 건축물 안전 확보라는 법안 취

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안대로 하면 행위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6개월과 2년간 영업정지를 처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등 소관법률에 처벌규정이 있는데도 처벌강도를 달리해 처분하는 것은 중복처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소한 법 위반에도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로 회사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례로 조명시설, 비상구, 작업장 출입구, 휴게시설, 수면장소의 설치나 의자 비치 등 안전관련 규정을 670개나 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도 영업정지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동 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정부, 국회가 건설업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건축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위헌소송 제기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석기자 jskim@